

대 법 원
제 3 부
[2019두43528]

사 건 명 : 승무 중 직무외 질병 결정 처분 취소

원 고 : 원고1

전남 신안군 이하 생략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1, 대법관2, 대법관3, 대법관4